의안번호	2214386
의 뢰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D6262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·분석방안에 관한 연구·개발을 시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6,600만원(연평균 9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·분석방안에 관한 연구개발(안 제4조제7호의2신설)	90	91	93	95	97	466	93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7호의2 (지방재정제도의 연구·개발 등) 신설	-행정안전부장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·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·개발을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6조의3 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"라 함)를 작성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[1]에 따른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	의무규정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~④ (생 략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7호의2(지방재정제도의 연구·개발 등) 신설	○	-
2	안 제36조의3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신설	×	-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,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-다만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에 관한 연구·개발 비용은 환경부에서 2023년에 실시한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연구·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

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[2)]를 적용함

❑ 부칙에서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	2.0	1.9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'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·분석 연구·개발' 비용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연구·용역 비용 8,6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,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7,600만원으로 추계됨

○ '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용역'[3], 한국환경연구원(수행기관), 8,600만원, 2022.7.~2023.7.

○ 개정안에 따른 연구·용역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·분석 연구·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	91	93	95	97	99	4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3) 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.go.kr)
※ 연구·용역 개요
-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여건 및 현황 분석
-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추진
- 지방재정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로드맵 제시
- 이해관계자 협의체(환경부, 행안부, 기재부, 지자체, 한국환경공단 등) 구성·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